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회 원격영상회의 제도입〉

-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208)
- 김태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268)
- 진선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290)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308)
-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383)
- 민병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417)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585)
- 정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279)
- 이용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316)

2025. 2.

국회 운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
III . 검토의견	11
1. 국회 원격영상회의 의의 및 연혁	11
2. 개정안의 입법배경 및 주요내용	12
3. 주요 검토사항	14
※ 참고자료	22

I . 제 안 경 위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안]

가. 발 의 자 : 소병훈 · 황운하 · 김 윤 · 한민수 · 박 정 · 장종태
김교홍 · 권철승 · 이병진 · 윤종균 · 추미애 의원(11인)

나. 제 안 일 : 2024. 12. 4.

다. 회 부 일 : 2024. 12. 5.

※ 의안번호 : 6208

[김태년의원 대표발의안]

가. 발 의 자 : 김태년 · 김성환 · 이학영 · 박지원 · 허 영 · 황명선
채현일 · 신영대 · 박균택 · 염태영 의원(10인)

나. 제 안 일 : 2024. 12. 5.

다. 회 부 일 : 2024. 12. 6.

※ 의안번호 : 6268

[진선미의원 대표발의안]

가. 발 의 자 : 진선미 · 김한규 · 강유정 · 강훈식 · 박정현 · 모경종
김영환 · 박민규 · 백승아 · 이재관 · 위성락 · 문정복
신장식 · 김우영 · 김성환 · 이재강 · 고민정 · 이용우
의원(18인)

나. 제 안 일 : 2024. 12. 9.

다. 회 부 일 : 2024. 12. 10.

※ 의안번호 : 6290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안]

가. 발 의 자 : 이수진 · 김준혁 · 송옥주 · 김문수 · 소병훈 · 박홍근
박해철 · 전종덕 · 추미애 · 서미화 의원(10인)

나. 제 안 일 : 2024. 12. 9.

다. 회 부 일 : 2024. 12. 10.

※ 의안번호 : 6308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안]

가. 발 의 자 : 이용우 · 모경중 · 이원택 · 진선미 · 민병덕 · 김한규
김교홍 · 박정현 · 박주민 · 백승아 의원(10인)

나. 제 안 일 : 2024. 12. 11.

다. 회 부 일 : 2024. 12. 12.

※ 의안번호 : 6383

[민병덕의원 대표발의안]

가. 발 의 자 : 민병덕 · 김남근 · 김재원 · 이강일 · 장철민 · 박희승
천하람 · 이해민 · 이용우 · 강준현 의원(10인)

나. 제 안 일 : 2024. 12. 12.

다. 회 부 일 : 2024. 12. 13.

※ 의안번호 : 6417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안]

가. 발 의 자 : 서영교 · 복기왕 · 김남근 · 차지호 · 정태호 · 한민수
용혜인 · 박해철 · 김교홍 · 이해식 의원(10인)

나. 제 안 일 : 2024. 12. 17.

다. 회 부 일 : 2024. 12. 18.

※ 의안번호 : 6585

[정일영의원 대표발의안]

가. 발 의 자 : 정일영 · 한정애 · 김영환 · 김종민 · 강유정 · 진성준
임호선 · 박상혁 · 김문수 · 임광현 의원(10인)

나. 제 안 일 : 2025. 1. 7.

다. 회 부 일 : 2025. 1. 8.

※ 의안번호 : 7279

[이용선의원 대표발의안]

가. 발 의 자 : 이용선 · 황명선 · 윤후덕 · 허 영 · 박지원 · 김성희

김문수 · 박용갑 · 김 윤 · 허성무 의원(10인)

나. 제 안 일 : 2025. 1. 7.

다. 회 부 일 : 2025. 1. 8.

※ 의안번호 : 73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안]

12월 3일, 대통령이 반헌법적 비상계엄령을 긴급 선포하고, 이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출입문 봉쇄, 무장병력 본청 진입 등 국회를 장악하려는 사태가 발생함.

현행법에 따르면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계엄 선포나 내란 외환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내란이나 계엄 선포와 같은 비상시국에도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본회의를 개의해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73조의3 신설).

[김태년의원 대표발의안]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회의와 그 표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대면회의 및 표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이에 지난 2020년 감염병 확산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었지만 2022년 6월에 유효기간의 만료로 효력이 상실되었음.

그러나 계엄 등 국회가 정상적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상황에는 원격영상회의를 통한 심의 및 표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 폐쇄,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출입 제한, 그 밖에 의장이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회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면에 의한 본회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3 신설 등).

[진선미의원 대표발의안]

2024년 12월 3일에 발생한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회의 기본적 활동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사태가 벌어짐. 계엄사령관이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를 물리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고 경찰 병력과 대치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

계엄군에 의해 국회 본회의장이 봉쇄될 경우, 국회는 계엄 해제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법적 공백 상태가 됨. 이로 인해,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 선포에 대해 해제 요구조차 논의할 수 없게 됨.

이에, 우리나라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보호하고, 비상시 국회의 기능과 헌법적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계엄 해제 관련 안건에 한해 국회 본회의를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3 신설).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안]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 하였음.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함. 국회의원은 비상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위해 국회로 모이려고 하였으나, 군과 경찰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모이지 못하게 출입을 통제하였음. 심지어 별도의 기동대를 꾸려 주요인사를 체포하려는 시도를 하였음.

이에 의장은 천재지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계엄(戒嚴)의 선포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 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3 신설).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안]

현행법은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요건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선포된 비상계엄의 경우에 다수의 국회의원이 국회출입을 저지당하여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하여 개의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음.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원격영상회의 운영 요건으로 전시·사변·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등으로 인한 긴급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신속한 출석이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73조의3 신설).

[민병덕의원 대표발의안]

지난 코로나 시기 국회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의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이번 ‘12.3 내란사태’와 같이 국회의 집회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는 등의 경우에, 신속한 국회 집회가 가능하도록 원격영상회의 운영 요건으로 천재지변·전시·사변·내란·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 등의 경우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73조의3 신설).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안]

계엄군에 의해 국회가 봉쇄될 경우 국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됨. 또한, 불법적인 계엄령이 발생할 경우 물리적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자칫 계엄해제를 하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음.

코로나 사태처럼 비상사태 발생 시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막고 불법적인 계엄 발생 시 즉각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위기 상황에서도 본회의가 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전쟁, 폭동, 계엄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원격영상회의 제도를 신설해 국회가 본래의 기능을 잃지 않고자 함(안 제73조의3 신설).

[정일영의원 대표발의안]

현행법에 따라 의장은 제1급 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음.

그런데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이 2022년 6월 30일로 이미 만료된 바 있고, 최근 불법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의원의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으면서 원격영상회의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아울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를 원격영상회의 개의 요건으로 규정한 현행법이 신속한 표결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효기간을 규정하지 않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비상계엄이나 경비계엄이 선포된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요건으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가 아닌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국회의 신속한 표결을 지원하려는 것임(제73조의2 삭제, 안 제73조의3 신설).

[이용선의원 대표발의안]

2020년 12월 22일에 개정된 「국회법」에서는 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인 원격영상회의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동 규정은 2022년 6월 30일에 유효기간의 만료로 실효되었음.

그러나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이 봉쇄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계엄 선포 등으로 인하여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회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를 실시하는 규정을 다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장이 계엄의 선포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회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엄 등의 비상상황에서도 국회의 정상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국회 원격영상회의 의의 및 연혁

원격영상회의는 국회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의미함.¹⁾

지난 코로나19 감염병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른 대규모 감염 가능성의 우려로 인해 국회의 회의 소집이 제약되었으나, 「국회법」에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음.

이에 국회는 코로나19 등 제1급감염병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회의 기능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제21대국회 국회법 개정(2020. 12. 22.)을 통하여 원격영상회의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음.²⁾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자 2021년 12월 재차 국회법을 개정하여 원격영상회의의 유효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6개월) 연장하였으나³⁾, 추가적인 유효기간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는 원격영상회의 규정은 존재하되 그 효력은 상실된 상황임.

1)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4, p.357

2) 「국회법(2020. 12. 22. 법률 제17756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의2(원격영상회의) ① 의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② ~ ⑦ (생략)

부칙 제2조(원격영상회의의 유효기간)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법률 제18666호 「국회법」 개정문 중 발췌>

법률 제17756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2. 개정안의 입법배경 및 주요내용

지난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경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12월 4일 0시 47분에 본회의가 개회되었고, 같은 날 1시경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박찬대의원 대표발의, 제6197호)」이 상정되어 재석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나, 계엄군으로 인하여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었음.

이에 각 개정안은 계엄 등으로 인한 국회 봉쇄 등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회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를 통한 안전심의 및 표결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사시 우리나라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보호할 수 있는 국회의 기능과 헌법적 권한을 보장하려는 입법취지로 이해됨.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지난 2020년 12월 도입된 후 현재는 효력이 상실된 원격영상회의 규정과 유사한 내용과 체계이나,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건과 절차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음.⁴⁾

[표-1] 개정안의 주요내용 비교

구분	종전	개정안(7건)
법적근거	<u>제73조의2⁵⁾</u>	<u>안 제73조의3 신설</u>
원격영상회의 개회 요건	<u>제1급감염병 확산</u> 또는 <u>천재지변</u> 등	- <u>전시·사변·내란·외환·계엄 등 국가비상사태</u> 또는 <u>제1급감염병 확산</u> 등 (소병훈의원안) - <u>국회 폐쇄, 국회의원 본회의장 출입 제한</u> 등 (김태년의원안)

4) 각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p.22 [참고1 : 개정안 조문대비표] 참조

		-<u>계엄 선포</u> (진선미의원안) -<u>천재지변,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계엄 선포</u> 등 (이수진의원안) -<u>제1급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전시·사변·계엄</u> 등 (이용우의원안) -<u>천재지변·전시·사변·내란·계엄 등 국가비상사태 또는 제1급감염병 확산</u> 등 (민병덕의원안) -<u>전쟁·폭동·계엄</u> 등 (서영교의원안) -<u>1급감염병 확산, 계엄, 천재지변</u> 등 (정일영의원안) -<u>천재지변,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사변, 계엄 선포, 1급감염병 확산</u> 등 (정일영의원안)
	의장이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u>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합의 필요</u>	<u>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합의/협의 필요</u> ※ 합의: 진선미, 이용우, 민병덕, 서영교의원안 협의: 소병훈, 김태년, 이수진, 정일영, 이용선의원안
의사일정 작성·변경	<u>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작성·변경</u>	<u>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협의를 거쳐 작성·변경</u> ※ 합의: 진선미, 이용우, 민병덕, 서영교의원안 협의: 소병훈, 김태년, 이수진, 정일영, 이용선의원안
출석의 효력	원격영상회의 출석 시 <u>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u>	
표결 가부	<u>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만 표결 가능</u>	<u>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협의를 한 경우 또는 제한없이 표결 가능</u> ※ 합의: 진선미, 이용우, 민병덕, 서영교의원안 협의: 소병훈, 이수진, 정일영, 이용선의원안 미제한: 김태년의원안
표결 방법	<u>「국회법」 제112조(표결방법)에 따라 표결.</u> <u>단,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수표결 가능</u>	
관련 시스템	국회의 <u>원격영상회의시스템 운영</u> (이수진의원안의 경우 생체정보를 활용한 의원 인증기능 필요)	
기타 사항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u>국회규칙에 위임</u>	
◦ 시행일: <u>공포한 날부터</u> 시행(소병훈, 김태년, 진선미, 이수진, 이용우, 민병덕의원안) <u>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u> 시행(서영교, 이용선의원안) <u>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u> 시행(정일영의원안)		

- 5) 「국회법」 제73조의2(원격영상회의) ① 의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3. 주요 검토사항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원격영상회의 개의 조건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의장이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요구하면서, 그 예시가 되는 상황을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소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음.

[표-2] 원격영상회의의 조건 관련 개정안별 비교

구 분	원격영상회의의 개의 조건	
소병훈의원안	• <u>전시·사변·내란·외환·계엄 등 국가비상사태 / 제1급감염병 확산</u> 등	국회의장이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김태년의원안	• <u>국회 폐쇄 / 국회의원 본회의장 출입 제한</u> 등	
진선미의원안	• <u>계엄 선포</u>	
이수진의원안	• <u>천재지변 /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 계엄 선포</u> 등	
이용우의원안	• <u>제1급감염병 확산 / 천재지변 / 전시·사변·계엄</u> 등	
민병덕의원안	• <u>천재지변·전시·사변·내란·계엄 등 국가비상사태 / 제1급감염병 확산</u> 등	
서영교의원안	• <u>전쟁·폭동·계엄</u> 등	
정일영의원안	• <u>1급감염병 확산 / 계엄 선포 / 천재지변</u> 등	
이용선의원안	• <u>천재지변 /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사변 / 계엄 선포 / 제1급감염병 확산 / 기타 국가비상사태</u>	

② 의장은 제76조제2항 및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제1항에 따른 본회의의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한다.

③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표결할 수 있다.

④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제6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12조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⑥ 국회는 원격영상회의에 필요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법률 제17756호(2020. 12. 22.)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각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예시규정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① 이번 비상계엄 또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함으로써 국회 외부의 세력이나 단체가 국회를 점거하거나 봉쇄하는 경우, ② 지진·홍수·화재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국회 건물이 붕괴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 및 ③ 코로나19 또는 그에 준하는 고위험 감염병이 창궐·확산함으로써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본회의 개의는 가능하되 다수의 의원이 격리되거나 참석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예시 규정은 입법자의 의도를 명확히 하고 법률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하나, 예시가 지나치게 협소하거나 과도할 경우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예시규정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현행법은 ① 임시회 집회공고 단축, ② 본회의 산회 후 재개의, ③ 안건의 심사기간 지정의 경우에 천재지변이나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⁶⁾

6) 「국회법」 제5조(임시회)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기일 1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

1.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한 경우
2.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 경우

제74조(산회) ②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5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표-3] 「국회법」상 국회 의사절차 예외규정

구 분	내 용	요 건
임시회 (§5②)	• 임시회 집회기일 1일전 공고	•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산회 (§74②)	• 본회의 산회 후 재개의	•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심사기간 (§85①)	• 국회의장의 안건 심사기간 지정	• 천재지변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둘째, 원격영상회의 개의, 의사일정 작성·변경 및 표결 등과 관련한 추가적 요건과 관련하여, 각 개정안은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합의 또는 협의를 거치도록 요구하거나 원칙적 협의를 거치되 표결에 한해서만 제한을 두지 않는 등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음.

[표-4] 국회의장-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합의/협의 관련 개정안 분류

구 분	본회의 개의	의사일정 작성/변경	표결	비고
1유형 (4건)	합의	합의	합의	진선미의원안 이용우의원안 민병덕의원안 서영교의원안
2유형 (4건)	협의	협의	협의	소병훈의원안 이수진의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이용선의의원안
3유형 (1건)			불필요	김태년의의원안

‘합의’는 협상 당사자인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 모두의 의견이 반드시 일치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논의를 거치는 것만으로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는 ‘협의’보다 엄격한 절차를 요구함.

코로나19와 같은 1급감염병 확산 등 본회의 개의 자체는 제약이 없으나 단순히 본회의장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합의’를 요구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번 12. 3. 비상계엄과 같이 해제 결의를 위한 국회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본회의 개의와 표결 등 가부에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합의’가 요구될 경우에는 그 절차의 엄격성으로 인해 본회의의 신속한 개의 및 의결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현행법은 의석배정, 국회운영기본일정 작성 및 의사일정 변경 등은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협의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등 국회 운영의 주요사항은 ‘협의’하는 것을 원칙⁷⁾으로 하고 안건의 심사 기간 지정,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미적용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합의’를 거치도록 규율하고 있음.

7) 1998. 6. 13. 「국회법」 개정 이후 유지되고 있는 원칙임.

[표-5] ‘협의’와 ‘합의’의 개념 및 「국회법」상 용례 비교⁸⁾

구 분	협 의	합 의
개 념	국회의장 또는 위원장 등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간사 등과 국회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는 절차를 의미	협상 당사자 모두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을 의미
성 격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를 거치면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봄	협의를 달리 합의는 반드시 의견이 일치하여야 함
용 례	-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의석배정, 국회운영기본 일정 작성, 회의 비공개, 의사 일정 변경 등) - 의장이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정보위원회 위원 선임 또는 개선) -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소관 상임위원회 배정, 회기전체 의사일정 작성) -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위원회 의사일정, 개최일시) - 소관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와 협의(연석회의 개최) - 위원회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위원회 운영규칙 제정)	-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심사기간 지정요건, 안전의 신속처리 미적용, 예산안 등 자동부의 미적용, 교섭단체 대표 연설 추가실시 등) -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의안 등 자동상정 미적용, 안전조정위원회의 활동 기간 90일 이내 별도지정 등)

셋째, 개정안의 시행일과 관련하여, 9건의 개정안 중 6건은 공포한 날부터, 2건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건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각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의 시행일은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본회의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소요기간과 연계되어 있는데,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는 6건의 개정안은 지난 2020년에 구축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8) 국회사무처, 「쉽게 풀어쓴 의회용어」, 2018. 7. 참조.

국회사무처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구축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은 국회의장단 등 회의 주재자와 50명 미만으로 구성된 일부 의원은 본회의장에 참석하고 그 밖에 의원은 원격으로 접속함으로써 본회의에 참석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고, 이를 위한 시스템도 본회의장이 아닌 국회 제2회의장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 마련되어 있음.⁹⁾

위 시스템은 국회 봉쇄 등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본회의 개회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상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본회의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거나 부족한 의결정족수를 보완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여 구축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번 12. 3. 비상계엄과 같이 국회가 봉쇄됨으로써 물리적으로 국회 내 본회의를 개회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개정안의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도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개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거나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예산 확보 및 사업수행 소요 기간 등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의견을 들어 적정한 유예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9건의 개정안 모두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관련 국회규칙 제정에 필요한 기간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9) 종전 시스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p.28 [참고2 : 종전 원격영상회의시스템 구성 및 운영] 참조

넷째, 개정안에 따라 국회 원격영상회의 제도가 재도입될 경우,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지난 2020년에 구축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추가 재정소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재구축 또는 전면 개편할 경우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됨.

이에 대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의 구축방안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므로,¹⁰⁾ 의원 출석 및 표결 방식¹¹⁾ 등 시스템 구축 방안을 확정된 후 이에 따른 소요예산 추계와 확보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

다섯째, 법제기술적 측면에서 개정안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경우 지난 2020년 12월 도입된 후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현재는 효력이 상실된 원격영상회의 근거 규정인 현행법 제73조의2를 삭제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9건의 개정안 모두 원격영상회의의 법적 근거를 안 제73조의3으로 신설하면서, 그 중 3건의 개정안(김태년, 정일영, 이용선의원안)만이 실효된 현행법 제73조의2를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유효기간이 정해진 법률 또는 규정은 해당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조치가 없더라도 실효되나, 이를 삭제하는 절차가 수반되지 않으면 여전히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효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음.

10) 국회예산정책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2024. 12, 참조.

11) 참고로, 종전 시스템은 전자표결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지 않아, 이의유무 의결, 거수표결, 호명표결, 기립 표결 등만 가능하였음(국회사무처, 「원격영상회의 운영 매뉴얼」, p.42)

따라서, 수범자인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 및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효력 없이 형식만 남아 있는 현행법 제73조의2에 대한 삭제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¹²⁾

여섯째, 우리 위원회에는 각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1급감염병 확산 또는 전시·사변·계엄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3건¹³⁾이 계류 중이므로, 향후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를 병합하여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16

12)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836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대표발의의원 및 의안번호는 아래와 같음.

①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제6460호), ②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제6979호), ③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제7111호)

① 소병훈, 김태년, 진선미의원안

소병훈의원안	김태년의원안	진선미의원안
제73조의3(원격영상회의 등) ① 의장은 전시·사변·내란·외환 또는 계엄이 선포되는 경우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등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제73조의3(원격영상회의) ① 의장은 국회 폐쇄,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출입 제한, 그 밖에 의장이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제73조의3(원격영상회의) ① 의장은 계엄(戒嚴)의 선포로 인하여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논의할 수 있는 안건은 계엄 해제에 관한 안건에 한정한다.
② 의장은 제76조제2항 및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하여 제1	② 의장은 제76조제2항 및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하여 제1	② 의장은 제76조제2항 및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하여 제1

소병훈의원안	김태년의원안	진선미의원안
<u>항에 따른 본회의의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한다.</u> ③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표결할 수 있다. ④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제6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12조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⑥ 국회는 원격영상회의에 필요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u>항에 따른 본회의의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한다.</u> ③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제5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12조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⑤ 국회는 원격영상회의에 필요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u>항에 따른 본회의의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한다.</u> ③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표결할 수 있다. ④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제6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12조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⑥ 국회는 원격영상회의에 필요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② 이수진, 이용우, 민병덕의원안

이수진의원안	이용우의원안	민병덕의원안
제73조의3(원격영상회의) ① 의장은 천재지변, 국가의安危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계엄(戒嚴)의 선포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76조제2항 및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본회의의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한다.	제73조의3(원격영상회의) ① 의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천재지변, 전시·사변·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76조제2항 및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본회의의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한다.	제73조의3(원격영상회의) ① 의장은 천재지변·전시·사변·내란·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76조제2항 및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본회의의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한다.

이수진의원안	이용우의원안	민병덕의원안
③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표결할 수 있다.	③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표결할 수 있다.	③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표결할 수 있다.
④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제6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12조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제6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12조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제6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12조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⑥ 국회는 생체정보를 활용한 의원 인증 등 원격영상회의에 필요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⑥ 국회는 원격영상회의에 필요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⑥ 국회는 원격영상회의에 필요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⑦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⑦ 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③ 서영교, 정일영, 이용선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이용선의원안
제73조의3(원격영상회의) ① 국회의장은 전쟁, 폭동, 계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76조제2항 및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	제73조의3(원격영상회의) ① 의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이나 경비계엄의 선포,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7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	제73조의3(원격영상회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2.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사태나 전시·사변 3. 계엄(戒嚴)의 선포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② 의장은 제76조제2항 및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

서영교의원안	정일영의원안	이용선의원안
<u>의원과 합의하여 제1항에 따른 본회의의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한다.</u> ③ <u>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표결할 수 있다.</u> ④ <u>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u> ⑤ <u>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제6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12조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u> ⑥ <u>국회는 원격영상회의에 필요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u> ⑦ <u>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u>	<u>의하여 제1항에 따른 본회의의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u> ③ <u>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표결할 수 있다.</u> ④ <u>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u> ⑤ <u>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제6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12조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u> ⑥ <u>국회는 원격영상회의에 필요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u> ⑦ <u>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u>	<u>의원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본회의의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한다.</u> ③ <u>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표결할 수 있다.</u> ④ <u>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u> ⑤ <u>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제6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12조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u> ⑥ <u>국회는 원격영상회의에 필요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u> ⑦ <u>그 밖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u>

1 원격영상회의 회의장 구성

Ⅰ 회의장소 : 제2회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 원격영상회의를 위한 설비가 既 구축되어 있어 추가 예산소요가 적고, 본회의장(제1회의장)과 가장 유사한 구조인 점 등 고려

Ⅱ 회의장 디스플레이 구성

- 의장석 전면 : 디스플레이 10대 운용

- 의석 뒤편 : 총 6대 설치(중앙 75인치 2대, 좌우 측면 55인치 4대)
- 의석 앞편(의석 첫 줄과 속기사석 사이) : 총 4대 설치(55인치 4대)
- ※ 의석 앞편의 디스플레이는 통로 입구에 배치하여 의장님과 회의장 참석의원 간 시야 확보
- ※ 예결위 활동을 감안하여 이동식 디스플레이 설치

- 영상회의 출석의원 최대 250명 동시 표출(대당 25명) ※ 회의장 출석의원 : 50명 이내
- ※ 영국의 경우 일부 의원이 회의장에 출석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본회의장 내 좌·우 벽면에 대형 디스플레이 설치·운용(상원: 10대, 하원: 8대)



- 회의장 참석의원 전면 : 의장석 좌우 전광판 2대 활용

- 원격영상회의 참석 화면(25분할) 또는 표결안건 목록 화면을 표시하되 필요시 국회방송 화면도 송출



14) 국회사무처, 「원격영상회의 운영 매뉴얼」, 2021. 3, pp.7-9

I 회의장 참석 및 의석 배정

- 회의장 출석의원 : 50명 이내(영상회의 출석의원 : 250명) ※ 거리두기 실시
 - 영국 하원 사례 및 제2회의장 수용 규모 등을 고려하여 회의장에 50명 이내 출석
 - ※ 영국 하원의 경우(20. 4. 21. ~ 5. 20.), 전체 하원의원 650명 중 50명으로 회의장 참석 제한
 - ※ 단, 코로나19 감염 추세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격상되는 경우, 교섭단체 간 출석인원 하향 조정 협의(회의장 출석 인원이 하향 조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용 디스플레이 2대 확보)
- 회의장 출석 대상
 - 원활한 협의 및 회의진행을 위해 교섭단체 원내지도부 및 발언이 예정된 의원은 회의장에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
 - ※ 교섭단체별 인원 배정 방안 및 참석의원은 교섭단체간 협의 진행
- 의석 배정 : 현재 본회의장과 동일 방식으로 배정
 - 의석 중앙에 제1교섭단체, 의장석을 향하여 우측에 제2교섭단체, 좌측에 비교섭단체 배정
 - 의석비율에 따라 회의장 출석의원 수 배정
 - ※ 의석비율별 인원 배정(안) ('21. 3. 기준)
 - 더불어민주당(174명, 58.0%) 29명, 국민의힘(102명, 34.0%) 17명, 비교섭단체(24명, 8.0%) 4명

【참고】 제2회의장 준비 및 의석배정(안) (회의장 50명 참석 시)



2 원격영상회의 방송중계 및 운영

I 방송중계

- 회의장은 기존 대면회의와 동일하게 회의장 내 6대의 카메라를 운용하여 촬영하고, 회의장 촬영 영상이 영상회의시스템에 표출될 수 있도록 조치
 - ※ 제1회의장 및 제2회의장 모두 각각 6대의 중계카메라 운용
- 회의장 현장 촬영 영상과 영상회의시스템 표출 영상을 함께 이용하여 중계 실시

I 의장석, 단상, 의사운영 보좌직원석 간 회의진행상황 확인 유기적 연계

- 회의상황 모니터링 PC 12대로 의원 영상 출석 및 의사진행관련 요청사항 등 확인
 - 출석확인 용도 10대(각 25명 의원 전담 관리) 및 종합 모니터링 용도 2대
- 특이사항 발생시(발언신청 등) 의사직원 및 단상 확인을 거쳐 의장님 보고
 - ※ 의장석 스크린과 단상 PC를 연계하여 신속히 해당 의원 화면 송출
- 발언의원이 있는 경우 의장석 전면 디스플레이 일부를 발언의원 포커스 화면으로 전환

